

January 08, 2021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68

[특집 II] 2021. 1. 8.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향

금일(2021. 1. 8.)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그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기업 경영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에서는 2020. 12. 9.에 이어 “정책 입법 동향 레터” 특집 II 편을 마련하여 위 법률안을 비롯한 기타 본회의 통과 법안을 소개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배경]

- 중대재해 사건은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강은미, 박주민, 이탐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 등 5건의 법률안과 청원1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여 최종 의결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중대재해 정의	사망 1명 이상 등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의무 범위	포괄적 부여(세부 사항 대통령령 위임)
처벌 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 중대산업재해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수위로 처벌하되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 등 제외
법인의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인과관계 추정 조항 /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	삭제
하도급 관계의 책임 범위	용도 · 도급 · 위탁
시행 시기	법 공포 1년 후(50인 미만 사업장, 법 공포 3년 후)
제외 사업장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개인사업장(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 기타 본회의 의결 법안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법안명	(대표)제안자	주요내용	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수정, 박홍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 규율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부여,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 상호저축은행의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 영업 일부의 양도나 양수 등의 신고 및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상호저축은행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관이나 업무의 종류·방법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주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 추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 지원 추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학영 의원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T. +84-24-3245-4043
E. yjiseo@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